#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6324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2024.08.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양부남의원	2024.09.0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1.22.)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 도·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 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확정함.

##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함.
- 마.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 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 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기술지원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필요 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 가. 행정정보
  - 나. 정보시스템
  -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 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 마. 정보화 예산
  -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을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을 "원칙 등을"로 한다.

제56조의2의 제목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로 한다.

-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3을 제56조의6으로 하고,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
  -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

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 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 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정보의 수집 · 가공 · 검색을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 목에서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u>가.</u> 행정정보 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 📗 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 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 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 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u>기</u>관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 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

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

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 (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수있다.

③ ~ ⑤ (생 략)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 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원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 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으로 사내용 및 복구 등) ① 중앙사 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 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보이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의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원칙	등
<u>을</u>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u><신</u>\_설>

-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 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 항
-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
   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
   항
-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 항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보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 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 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 구 등에 -----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 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 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 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 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 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 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확정하 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 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 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 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

<신 설>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 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

<신 설>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 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 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 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 한) (생 략)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 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 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 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한)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u> &lt;신 설&gt;</u>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
	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u>관한 업무</u>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